#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9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이양수·서천호·박덕흠

이인선 • 배준영 • 이철규

김선교 • 서범수 • 박준태

서일준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(이하 "수협중앙회"라 한다) 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하지만 어업인 고령화,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, 수산물 유통·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.

이에,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·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, 회원조합·어업 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9조제2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7조제3항제4호 중 "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"를 "사업전담대표이사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"를 "사업전담대표이사의"로 한다.

제127조의2제1항제2의2호를 삭제한다.

제12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3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35조제3항 전단 중 "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의"를 각각 "사업전담대표이사의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7조(이사회) ①・② (생 략)	제127조(이사회) ①・② (현행과		
	같음)		
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	③		
항을 의결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	4. <u>사업전담대표이사의</u>		
<u>사의</u>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			
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			
영평가			
5.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	5. <u>사업전담대표이사의</u>		
<u>사의</u>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			
6. ~ 12. (생 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		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		
제127조의2(인사추천위원회) ①	제127조의2(인사추천위원회) ①		
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			
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			
회를 둔다.	·.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2</u> 의2. 제134조제3항에 따라 선	<u>&lt;삭 제&gt;</u>		
출되는 상임이사			
3. · 4. (생 략)	3.・4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제129조(임원) ① (생 략)	제12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		

-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
- 3. (생략)
- ① · ② (생 략)
  - ③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 <삭 제> 하되,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인사추 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<u>한</u>다.
  - ④ ~ ⑨ (생 략)
- 제135조(임원의 해임) ① ② (생 략)
  - ③ 이사회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 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거나,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는 총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의 해

②
1.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<u> </u>
3. (현행과 같음)

제134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 제134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> ④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35조(임원의 해임) ①・② (현 행과 같음)

③사업전담대표이사
<u>의</u>
사업전담대표이사
<u>의</u>

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	
단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	
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